인천대학교 학내 시험 및 평가 관련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라인

최근 타 대학 및 외부 기관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(AI 글래스) 등 신종 웨어러블 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, 우리 대학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반 확립을 위하여 시험 운영 시 준수사항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함

1. 적용 범위

- 수시시험(중간시험), 기말시험, 임시시험(과제물, 발표, 세미나 등) 등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성적평가

2. 시험 시행 기준

- 본교 정규 강좌의 평가 방식은 '오프라인'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「인천대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지침」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일부 강좌의 경우, 필요 시 화상회의 프로그램 및 화면 공유 등을 통한 주변 환경 확인을 병행하여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함

3.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안내

- 금지 물품

- 스마트 안경(AI 글래스), 스마트워치·밴드·링, 무선 이어폰,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노트북, 전자시계 등 통신 및 정보 검색 기능이 탑재된 모든 전자기기 일체

- 보관 원칙

- 시험 시작 전,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종료하고, 가방에 넣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

- 유의 사항

- 담당 교원은 시험 실시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의 금지 물품 및 제한 사항,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조치(성적 취소 등)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안내 요망
-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시험 중 전자기기를 몸에 소지 및 사용하거나, 고의적으로 은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
  (※ 단, 시험의 특성 상 담당 교원이 사전에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)

4. 생성형 AI 및 스마트 안경(AI 글래스) 관련 조치사항

- 생성형 AI 관련 유의사항

- 교과목의 특성상 AI 또는 외부 프로그램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, 담당 교원은 사전에 AI 활용 가능 여부 및 허용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여야 함
- 담당 교원이 AI 활용을 허용하지 않은 교과목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시험 답안이나 과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

- 스마트 안경 관련 유의사항

- 스마트 안경은 이미지 인식, 정보 검색 및 통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험장 반입 및 착용을 전면 금지함

- 시험 전 또는 시험 진행 중, 감독관이 안경 착용자에게 확인(카메라 렌즈, 두꺼운 테두리, 조작 버튼, 충전 단자 등)을 위해 안경을 잠시 벗어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
- 학생이 감독관의 정당한 확인 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

5. 주요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

- 부정행위 유형

-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-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- 감독관의 시험 종료 안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- 시험 중 소지 및 사용이 금지된 물품의 제출 및 보관에 관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 생성형 인공지능(AI) 등을 이용하여 과제물 및 시험 답안을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
- 온라인 시험에서 다른 응시자와 함께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
-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화면을 이탈하거나,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, 특수키, 통신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
- 이 외 학업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체

-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

- **[학과 및 단과대학]**: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의 답안지를 즉시 회수하고, 상단에 “부정행위” 명기 후, **부정행위 사실확인서[별첨1] 및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처(학사과)로 신고**
- **[교무처]**: 부정행위자 적발사항 현황 보고 및 학생·취업처 통보
- **[학생·취업처]**: 인천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행위자 징계 처리
  (※ 단, 학생이 부정행위를 자인하지 않거나 사실확인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, 무리하게 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감독관의 정황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로 해당 서류(학생 서명)를 대체 또는 생략 가능)

-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

- 부정행위자 적발 시,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**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취소(F등급/Fail) 처리**되며, 추가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

[인천대학교 학칙] 제76조(학점취소 및 포기)
①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.

[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] 제50조(시험 시행 요령)
7. 부정행위자 처리: 감독교수가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때에는 본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자인 받은 후 답안지에 “부정행위”라고 명기하여 교무처장에게 인계하며 교무처장은 즉시 학생·취업처장에게 통보한다.

제58조(성적의 취소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.
1. 시험 중 부정행위로 해당 시험 또는 전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
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

[인천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] 제10조(징계사유)
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1. 학칙 등 학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학업 또는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, 학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인천대학교
INCHEON NATIONAL UNIVERSITY

본 가이드라인은 신종 스마트 기기 발전 및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
매 학년도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 및 업데이트 예정입니다.